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문서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16.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고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4.16. ~ 2026.04.30.

다. 공고장소: 구(동) 게시판, 구보 및 홈페이지, 전국시군구 게시판

라. 예정된 처분의 제목: 조합설립인가 취소

마. 당사자 명칭(주소): 복권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5길 39)

바.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1) 취소 사유

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함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1호

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함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2호

2) 처분의 내용: 조합설립인가 취소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사. 청문 주재자: 관악구청 건축과 건축관리팀장

아. 청문일시: 2026.05.18.(월) 14:00

자. 청문장소: 관악구청(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주택과)

차.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879-6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